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517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4. 15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정순기 의원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제3항, 제6조제6항, 제7조)
- 조문의 주어인 “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”을 추가(안 제4조)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5조)
- 조문 제목 및 인용 조항 변경(안 제6조)
- 지원대상 사업 등에 “재향군인회 운영비” 추가(안 제6조제5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5조, 제6조, 제16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: 2024. 4. 16. ~ 2024. 4. 22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금천구민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재향군인”이란”으로,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란 법 제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중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금천구민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향군인”을 “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(이하 “지원대상 사업 등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의 제목 “(지원대상사업)”을 “(지원대상 사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”을 “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5. 재향군인회 운영비

제7조제1항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자”를 “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<u>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</u>를 말한다.</p> <p>2. <u>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“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회”(이하 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구민의 협력) 모든 <u>구민은</u>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금천구민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p>1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 <u>제5조에 따른</u> ----- -----.</p> <p>2. -----<u>란 법 제6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구민의 협력) --- <u>서울특별시 금천구민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다.

제4조(예우)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3.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대상사업)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- <신설>
5.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

--.

제4조(예우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-----

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-----
-
-

제5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(이하 “지원대상사업 등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대상 사업 등)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등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재향군인회 운영비
6. 그 밖에 -----
-
-
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----

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
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
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서
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
리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
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
보고하여야 한다.

-----.

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
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용 결
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
하여야 한다.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5. 01. 01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791호, 2014. 12. 3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

재향군인에 대한 국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2. 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“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회”(이하 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구민의 협력) 모든 국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우)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2.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
3.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

보조금을 지원할 수

있다.

제6조(지원대상사업)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2.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3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4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5.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부칙(제522호, 2007.12.28)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중복지원 금지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칙(제79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2014.12.30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

제2조(다른 조례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
원조례(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645호, (일부개정)2011.01.01) 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” 를 “서울특별시 금
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” 로 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

[시행 2024. 1. 12.] [법률 제19524호, 2023. 7. 11., 일부개정]

제5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3. 6. 4., 2016. 5. 29.>

1. 육군·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
2.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
3.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·준사관(準士官)·부사관(副士官) 및 병(兵)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제6조(조직)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, 시·도회, 시·군·구회 및 읍·면·동회를 두며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(職場支會)·연합분회(聯合分會)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,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·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·도회를 두며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시·군·구회를 두고, 읍·면·동에 읍·면·동회를 둔다. <개정 2013. 8. 13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 삭제 <2016. 5. 29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